

## 「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」 일부개정

### 1. 개정이유

“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” 후속조치로 대형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BIM을 활성화 하고, 연속적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발주단계에 BIM 적용 검토 의무화(안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)

1천억 이상 대형공사는 발주단계에서 BIM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여 건설 전 과정(설계~시공~유지관리)에 BIM 안착 유도

나. 반복 유찰 방지를 위한 재심의 규정 마련(안 제3조제8항 및 제4조제2항)

제5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에 따른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 및 발주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입찰방법 재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마련

다. 기타 개정사항: 공고 방법 현행화(신문→홈페이지) 등(안 제7조 등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 고시안

「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938호, 2021. 07.0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
제3조 중 제4항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시 검토사항에 BIM(LOD200 이상)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한다.

1,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BIM(LOD 200 이상)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 위원회 심의요청 시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검토사항의 누락, 공사비 적정성이 부적합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할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, 기술설계기술제안입찰,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공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집행기본계획서 제출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발주청장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,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 <p>⑧ (신설)</p>	<p>제3조(집행기본계획서 제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BIM(LOD200 이상)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시공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~4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 <p>⑧ 발주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입찰방법으로 심의받은 공사가 유찰된 경우 공사비와 입찰예정시기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 후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방법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</p>
<p>제4조(위원회 심의요청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발주청장이 제출한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시기가 맞지 않거나 검토사항이 누락되는 등 건설기술심의 요청이 곤란한 때에는 발주청에 기본계획서</p>	<p>제4조(위원회 심의요청) ① (생략)</p> <p>② ----- ----- 검토사항의 누락, 공사비 적정성의 부적합 등 ----- -----</p>

<p>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
<p>제5조(심의기준 등) ① 1.~2. (생략)</p> <p>3.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</p> <p>가.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<u>40%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(추정가격) 이상인 경우</u></p> <p>나. ~ 라. (생략)</p> <p>4.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: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공종이 계약단위 공구를 기준으로 해당 총공사비의 <u>30%이상을 차지하거나 200억원(추정가격) 이상인 경우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 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(신설)</u></p>	<p>제5조(심의기준 등) ① 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<u>40%이상을 차지한 경우</u></p> <p>나. ~ 라. (생략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30%이상을 차지한 경우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1000억원 이상 공사중 BIM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</u></p>
<p>제7조(공고 등) 위원회 주관 행정관서의 장은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,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,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</p>	<p>제7조(공고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사와 해당 공사의 낙찰자결정방법  
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문  
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(국가종합  
전자조달시스템: [http://www.g2b.](http://www.g2b.go.kr)  
go.kr)에 공고하여야 한다.

-----  
-----  
홈페이지-----  
-----  
-----.

## 대형공사 BIM 적용(불가능) 사유서

1. 공사명 :

2. 사업(공사)개요

○ 도로축조 : L= km, B= m(왕복 ○차로)

- ○○교 L = 2000m

- ○○터널 L = 4000m

- 일반구간 L = 1000m

※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

3.공사추정금액 : 억원 (보상비 제외)

○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

- ○○교(길이=2000m) : 억원

- ○○터널(길이=4000m) : 억원

- 기 타 : 억원

4. 공사 위치 및 평면도

○ 별도 붙임

5. BIM 적용(불가능) 사유서

※BIM 적용이 적용(불가능)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

(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1의 제1종 시설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LOD300이상으로 적용)

붙임 : 관련증빙 자료

■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[별지 제3호서식 개정]

(앞쪽)

## 심의 의견서

- ' 00년, 제00차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-

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결정방법 심의 안건에 대한 심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심의안건			심의요청		
발주기관	공사비		입찰예정		
공사개요					
심의대상 시설기준	내 용				
	충족여부	[ ]매우충족 [ ]충족 [ ]미달 [ ]□매우미달 (200%이상)		(50%미만)	
공사기간 단축 필요성	공사종류	[ ]국제행사 [ ]국책사업 [ ]수해복구 [ ]국가안보 [ ]기타			
	필요성 정도	[ ]매우필요 [ ]필요 [ ]보통 [ ]해당없음			
	사유				
고난도/고기술	필요성 정도	[ ]매우필요 [ ]필요 [ ]보통 [ ]해당없음			
	사유				
신기술/신공법	필요성 정도	[ ]매우필요 [ ]필요 [ ]보통 [ ]해당없음			
	사유				
상징성, 예술성 창의성 등	필요성 정도	[ ]매우필요 [ ]필요 [ ]보통 [ ]해당없음			
	사유				
스마트 건설기술	필요성 정도	[ ]매우필요 [ ]필요 [ ]보통 [ ]해당없음			
	사유				
기타 검토사항 • 설계변경 빈번 • 보증책임불명확 • 자재공급자 일괄시행 필요 • 공사비 절감	필요성 정도	[ ]매우필요 [ ]필요 [ ]보통 [ ]해당없음			
	사유			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  
(뒤쪽)

【심의의결】	입찰방법	[ ]요청안 [ ]요청안이 아닌 기타공사 [ ]재심의
	낙찰자 결정방법	[ ]설계적합최저가 [ ]입찰가격조정 [ ]설계점수조정 [ ]가중치기준 [ ]확정가격최상설계
<p>【심의의견】</p> <p>○ 분리 도급(발주)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 적정 여부 (기타공사로 의결된 경우 작성 불필요)</p> <p>[ ]적정, [ ]부적정, [ ]기타의견</p>		



○ BIM 적용 발주청 검토의견 적정 여부

(발주청이 BIM 적용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작성 불필요)

[ ]적정, [ ]부적정, [ ]기타의견